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68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임이자·송언석·김성원

최수진 • 박덕흠 • 이상휘

배준영 • 우재준 • 김태호

김위상 의원(!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은 95년 7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간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신고) 누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적용제외 근로자를 소득 기준으로 정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누락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5조).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을 "소득 기준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제45조의 제목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

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기간의 총 일수 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으로 인해 보수총액 확인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근로자인 피 보험자가 제10조제1항제2호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이직시까지는 그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보수일액 산정 소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정 안 혂 했 개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제10조(적용 제외)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 니하다. 1. 삭 제 2. 해당 사업에서 <u>소정(所定)근</u> 2. ----- <u>보수가</u> ----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 --- 소득 기준 미만--. 다만, 서 신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 설> 가. 일용근로자 <신 설> 나.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 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근로자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 일액) <신 설> 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 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 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 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 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 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 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 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 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 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 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고된 보수총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
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으로 인해 보수총액 확인이 어
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u>제2항</u>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 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 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 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 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 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 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 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u>.</u>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u>⑤</u> <u>제4항</u>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산정한다.	
<u>⑤</u>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의 규	<u>⑥</u> <u>제4항</u>
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	
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	
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	
다.	